

ORIGIN CASE

Vol. 7



한국원산지정보원

CONTENTS

Case 1.	알루미늄 포일	1
Case 2.	수직펌프의 펌프 엔드 (제8413.91호)	5
Case 3.	F-클램프	11
Case 4.	가솔린 구동 수평축 엔진 (제8407.90호)	15
Case 5.	변속기용 볼 베어링 (제8482.10호)	21
Case 6.	자동차용 선쉐이드 & 시트커버 (제8708.29호 및 제8708.99호)	26
Case 7.	펌프 부분품 - Fluid ends	31
Case 8.	에어컨 실외기	35
Case 9.	물티슈	39
Case 10.	자동차 에어백 시스템	42



case

1

알루미늄 포일

요약

사례명	알루미늄 포일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02201 (2020.04.06.)
사실관계	중국산 포일스톡을 독일로 수입한 후, 냉간 압연, 어닐링 등의 공정을 수행하여 알루미늄 포일 생산
쟁점 및 판정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p>CBP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국산 포일스톡이 완전히 다른 상업적 제품인 알루미늄 포일로 변형되었으므로 독일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냉간 압연 공정을 통해 알루미늄의 두께가 최대 98%까지 감소함- Ferrostaal(1987) 판례와 유사하게 어닐링 공정은 화학적 조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원자재의 연성과 연질성을 회복시키고, 포일의 원자 구조를 재구성하여 기계적 특성을 추가로 변화시킴- 알루미늄 포일은 포일스톡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며, 식품, 의약품 등 제품의 포장재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그 용도 또한 상이함- 더불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독일에서의 공정이 더욱 복잡하고 광범위하며, 제품 생산을 위한 비용 및 시간 또한 독일에서의 공정이 더욱 높음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I 판정사례

사례명 [알루미늄 포일]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02201 (2020.04.06.)

사실관계

요청자 Amcor Flexibles Singen GmbH (대리인: Drinker Biddle & Reath LLP)

제품명 • 알루미늄 포일

제품 구성 • 포일 스톡

용도 • 식품, 의약품 등 제품의 포장재

제조공정



01

중국산 포일스톡
독일로 수입



02

어닐링 및 냉간 압연 공정 등
수행



03

미국 수출

상세공정 1. 중국산 포일스톡(foil stock)를 독일로 수입

2. 독일 제조 공정

- 압연 작업을 위해 어닐링 공정 수행
- 냉간 압연 공정을 통해 두께 감소(3~4mm에서 0.25~2mm로 두께 감소)
- 추가 어닐링 공정 수행(연화 및 표면 윤활유 제거)
- 필요한 경우 코팅, 래커 처리 또는 적층 공정 수행

3. 미국 수출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1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42, 681 F.2d 778 (1982)

- CBP는 해당 사안의 판정을 위해 아래의 판례 및 사전심사 결정문을 인용

❖ 참고 판례: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664 F. Supp. 535 (Ct. Intl. Trade 1987)

- 어닐링 공정이란 강철 제품의 냉간 압연 후 연성(ductility)을 복원하기 위해 고온으로 가열한 후, 물 또는 기타 수단으로 급속 냉각하는 공정임
- CIT(Court of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법원)는 어닐링 공정이 실제 화학적 조성이나 물리적 치수를 변화시키지는 않으나, 강철 내 탄소와 질소의 분포에 영향을 미쳐 냉간 압연된 강철의 변형 에너지를 제거하고, 강도는 낮추는 대신 연성과 성형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
- CIT는 연성과 강도가 강철의 중요한 특성이며, 어닐링 공정은 강철의 성질(character)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킨다고 판단하였고, 이 공정을 통해 새롭게 부여된 강도와 연성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용도가 전용되었다고 판단
- 비슷한 맥락에서 CIT는 판유리를 가열한 뒤 급속 냉각하여 강도를 증가시키는[일반적으로 템퍼링 (tempering) 이라 불림] 공정 또한 새로운 상업적 제품을 창출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Guardian Industries Corp. v. United States*, 3 CIT 9, 16 (1982) 인용]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H84171 (2001.08.10.)*

사례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산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코일을 가공(냉간 압연을 통한 두께 감소 및 성형성 부여를 위한 어닐링 공정 수행)하여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판 생산

판정 인도네시아에서 수행된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242034 (2013.08.12.)*

사례 중국에서 냉간 인발 공정을 통해 생산된 green pipe를 일본으로 수입하여, 1차 어닐링, 냉간 인발, 2차 어닐링, 교정을 포함한 여러 단계의 공정 수행

판정 반가공 제품이 ASTM A312 규격 요건을 충족하는 완제품으로 전환되었기에 일본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Ferrostaal 판례에 부합하게 어닐링 공정이 초기 green pipe에 새로운 명칭, 특성, 용도를 부여한다고 판단함

관련 법령 및 분석

판정 결과

- ▣ CBP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국산 포일스톡이 완전히 다른 상업적 제품인 알루미늄 포일로 변형되었으므로, 독일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함
- 냉간 압연 공정을 통해 알루미늄의 두께가 최대 98%까지 감소함
 - Ferrostaal(1987) 판례와 유사하게 어닐링 공정은 화학적 조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원자재의 연성과 연질성을 회복시키고, 포일의 원자 구조를 재구성하여 기계적 특성을 추가로 변화시킴
 - 알루미늄 포일은 포일스톡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며, 식품, 의약품 등 제품의 포장재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그 용도 또한 상이함
 - 더불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독일에서의 공정이 더욱 복잡하고 광범위하며, 제품 생산을 위한 비용 및 시간 또한 독일에서의 공정이 더욱 높음

결론

- ✓ 최종 제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는 독일임

II 시사점

- CBP는 포일스톡을 가공하여 알루미늄 포일을 만드는 경우, 냉간 압연 및 어닐링 공정이 포일 스톡의 화학적 조성을 변형시키지는 않으나, 연성, 연질성 및 기계적 특성이 변화하고 두께가 현저히 감소하여 전혀 다른 용도의 물품으로 변화하므로 실질적 변형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02201 (2020.04.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2201>
- CBP Ruling NY H84171 (2001.08.10.), <https://rulings.cbp.gov/ruling/H84171>
- CBP Ruling HQ H242034 (2013.08.12.), <https://rulings.cbp.gov/ruling/H242034>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987),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504219/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q=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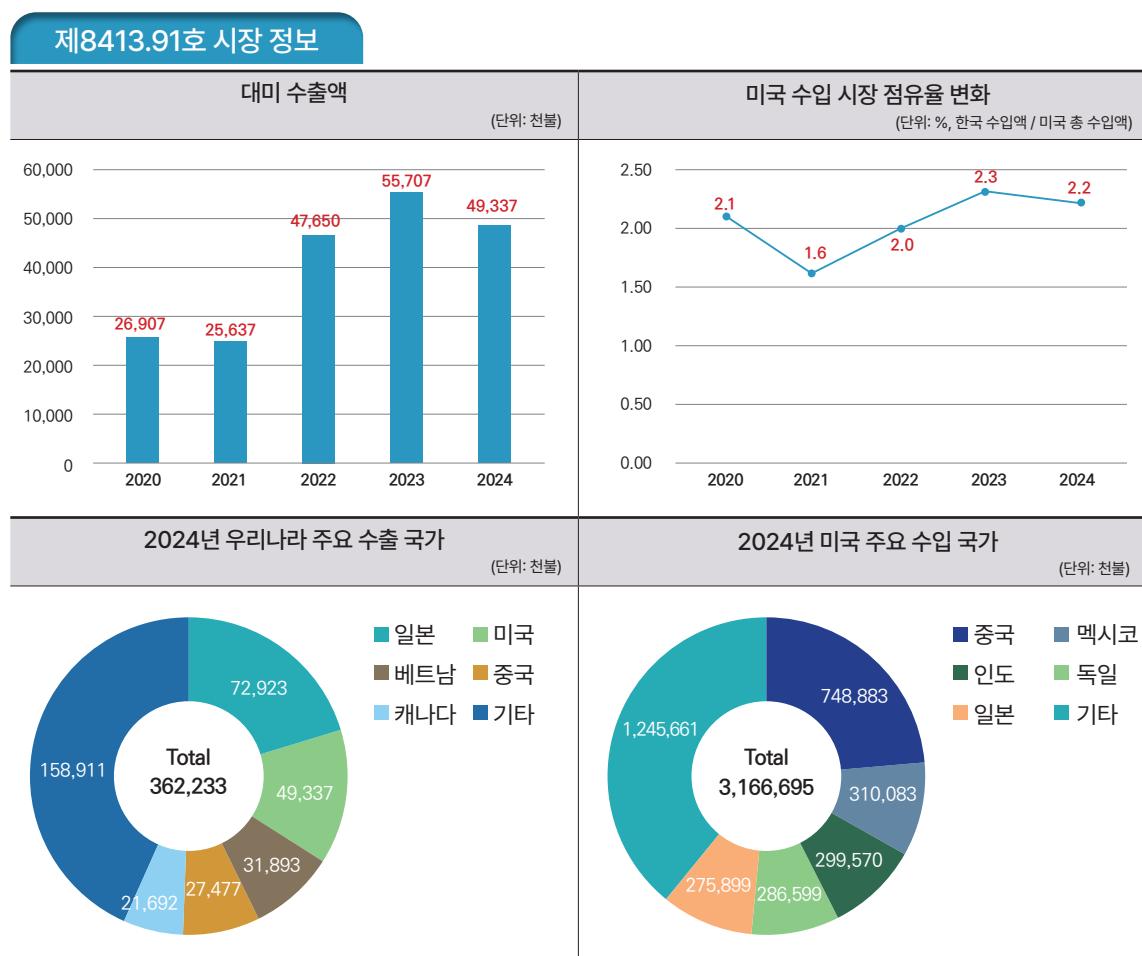
수직펌프의 펌프 엔드

요약

사례명	수직펌프의 펌프 엔드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13089 (2021.02.16.)
사실관계	중국산 부품(임펠러, 흡입 벨, 흡입 볼)을 캐나다로 수입한 뒤, 캐나다산 결합 부품 (샤프트, 볼 베어링 등)과 함께 최종 조립하여 펌프 엔드 생산
쟁점 및 판정	<p>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최종 제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부품은 중국산 임펠러이며, 캐나다에서 트리밍 등의 공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기능적으로 작동 가능한 상태이므로 캐나다에서 공정을 통해 명칭, 성질 및 용도가 변화했다고 볼 수 없음또한 최종 제품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중국산 임펠러, 흡입 벨, 흡입 볼은 실제 유체를 이동시키는 주요 기능에 관여하나, 캐나다산 부품은 이러한 주요 부품을 단지 밀봉하고 결합하는데 주로 사용되므로 중국산 부품에 비해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결과적으로 기능적 측면에서 중국산 부품이 최종 제품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더욱 높으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임
근거법령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8413.91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미국 기본세율
	한-미 FTA 협정세율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사례명 [수직펌프의 펌프 엔드]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13089 (2021.02.16.)

사실관계

요청자 Sulzer Pump Solutions, Inc. (대리인: Kelley Drye & Warren LLP)

제품명	• 수직펌프의 펌프 엔드	
제품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흡입 벨 (중국산) 펌프 샤프트 (캐나다산) 임펠러 (중국산) 흡입 볼 (중국산) 잠금 콜릿 (캐나다산) 어댑터 플랜지 (캐나다산) 흡입 스트레이너 (캐나다산) 볼 베어링, 흡입 벨 베어링 (캐나다산) 임펠러 마모 링, 고정 마모 링, 스러스트 링 (캐나다산) 스러스트 링 리테이너 (캐나다산)
용도	• 액체 이동용	
완제품 HTSUS	• 8413.91.90	

제조공정



상세공정

1. 중국산 부품을 캐나다로 수입
2. 캐나다 제조 공정
 - 고객 사양에 맞게 임펠러 트리밍
 - 흡입 벨을 생산 테이블에 장착 및 안정화
 - 펌프 엔드가 식수용으로 사용될 경우 임펠러를 제외한 모든 주조품에 내부 코팅
 - 흡입 볼을 흡입 벨에 볼트로 고정
 - 펌프 샤프트를 흡입 벨 내부에 삽입
 - 임펠러를 샤프트 안으로 밀어 넣고 잠금 콜릿으로 고정
 - 어댑터 플랜지를 샤프트 위에 끼우고 상단 볼에 볼트로 고정하여 임시 펌프 엔드 완성
 - 테스트 후 균형 조정, 트리밍, 연마 등 추가 가공 수행
 - 펌프 엔드 외부에 페인트 코팅
3. 미국 수출

쟁점사항

-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1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사례별로 이루어짐

- CBP는 새롭고 상이한 상업적 물품을 ①상업적 명칭 또는 정체성의 변화, ②본질적 성질의 변화, ③상업적 용도의 변화를 겪은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행된 작업의 범위, 해당 부품 또는 자재들이 개별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물품의 필수 구성 요소로 통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음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제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소한 공정인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사례 손전등 생산을 위한 약 50여 개의 원재료 중 백색 LED 및 Hydrogen Getter를 제외한 모든 원재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미국에서 조립

판결 수입된 구성 요소들이 완제품으로 조립된 후에도 개별 부품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수입 당시 이미 손전등 부품으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조립 과정에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

- 제조 또는 조립 과정이 단순한 공정(minor process)으로서 원재료가 공정 후에도 본질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3864 (2019.12.26.)*

사례 중국산 전기 모터를 멕시코로 수입하여 멕시코산 부품(펌프 하우징, 씰, 터미널 커넥터 하우징 등)과 같은 부품을 압입하여 펌프 어셈블리를 생산하였으며, 후에 성능 및 누출 테스트를 거친 후 세척, 라벨링 및 육안 검사 수행

관련 법령 및 분석

판정

완성된 펌프 어셈블리의 본질은 전기 모터에 있으며 나머지 부품을 조립하고 검수하는 과정은 전기 모터를 새로운 물품으로 변형시킬 만큼 복잡한 공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당 최종 제품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3043 (2019.04.18.)*

사례

중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 제조된 부품을 세르비아로 수입하여 스템핑, 경화, 권선, 크림핑 등과 같은 공정을 거쳐 스테이터 서브 어셈블리 제조.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된 부품을 사용하여 로터 하우징의 자화 및 성형, 세르비아산 임펠러를 로터에 압입하여 로터 서브 어셈블리를 제작 하였으며, 이후 스테이터 서브 어셈블리와 모터 서브 어셈블리를 조립하여 전기 모터 형성. 형성된 전기 모터는 세르비아산 블루트에 부착

판정

CBP는 세르비아산 임펠러와 블루트가 펌프 어셈블리의 핵심이라고 판단하면서 대부분의 외국산 구성요소가 스템핑, 자화, 압입 등의 복잡한 공정을 통해 임펠러 및 블루트와 결합하여 펌프 어셈블리로 변형되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를 세르비아로 판정함

판정 결과

- 최종 제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부품은 중국산 임펠러이며, 캐나다에서 트리밍 등의 공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기능적으로 작동 가능한 상태이므로 캐나다에서 공정을 통해 명칭, 성질 및 용도가 변화했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최종 제품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중국산 임펠러, 흡입 벨, 흡입 볼은 실제 유체를 이동시키는 주요 기능에 관여하나, 캐나다산 부품은 이러한 주요 부품을 단지 밀봉하고 결합하는데 주로 사용되므로 중국산 부품에 비해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 결과적으로 기능적 측면에서 중국산 부품이 최종 제품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더욱 높으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임

결론

- ✓ 캐나다에서의 공정은 주요 부품인 중국산 임펠러, 흡입 벨, 흡입 볼에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고 최종 제품의 본질적 특성은 중국산 임펠러에 의해 부여되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임

III 시사점

- 본 사례에서 펌프 엔드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핵심 부품은 임펠러이며, 외국산 임펠러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 해당 가공이 단순한 조립 및 결합 등에 해당한다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음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13089 (2021.02.16.), <https://rulings.cbp.gov/ruling/H313089>
- CBP Ruling HQ H303864 (2019.12.26.), <https://rulings.cbp.gov/ruling/H303864>
- CBP Ruling NY N303043 (2019.04.18.), <https://rulings.cbp.gov/ruling/N303043>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3

F-클램프

요약

사례명	F-클램프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12674 (2021.02.24.)
사실관계	한국에서 중국산 강철 막대로 만든 클램프 본체와 수직 암을 중국으로 수출한 뒤, 중국에서 추가 가공, 연마, 기타 부품 조립을 통해 최종 제품인 F-클램프 생산
장점 및 판정	<p>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최종 제품인 F-클램프의 핵심 기능은 한국에서 생산된 클램프 본체에 의해서 부여되며, 클램프 본체를 생산하기 위해 중국산 강철 막대에 행해진 한국에서의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므로, 클램프 본체의 원산지는 한국임클램프 본체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입될 당시 이미 그 형태와 외관이 최종 제품인 F-클램프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반면, 중국에서 수행된 표면 처리 및 부품 결합 공정은 단순 공정으로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킬 만큼 복잡하고 의미 있지 않으므로, 최종 제품에 대한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는 클램프 본체의 원산지인 한국임
근거법령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I 판정사례

사례명 [F-클램프]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12674 (2021.02.24.)

사실관계

요청자 Tractor Supply Company (대리인: Lowenstein Sandler LLP)

제품명 F-클램프

- 클램프 본체
- 조절 가능한 수직 암

제품 구성

- 나사
- 바/손잡이
- 회전 패드

용도 목공 작업에서 목재를 임시로 고정할 때 사용되는 수공구

제조공정



상세공정

1. 중국산 강철 막대를 한국으로 수입
2. 한국에서 중국산 강철 막대 이용하여 고정 조를 포함한 L자 형태의 클램프 본체 및 직선 형태의 조절 가능한 수직 암 제조
3. 클램프 본체 및 수직 암 중국으로 수출
4. 중국 제조 공정
 - 클램프 본체 및 수직 암에 대해 추가 가공, 연마, 열처리 및 도금 공정 수행
 - 중국산 나사, 바/손잡이, 회전 패드를 조립하여 최종 제품 생산
5. 미국 수출

쟁점사항

-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v. United States*, 681 F.2d 778, 782 (1982)

- 다양한 원산지의 부품들이 조립되어 완제품이 되었을 경우,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사례별(case-by-case)로 이루어짐
- 이때, 부품들의 원산지, 해당 국가 내에서 수행된 가공의 범위, 가공으로 인해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가진 제품으로 변화했는지 여부, 제품 설계 및 개발에 투입된 자원, 조립 후 실시되는 검사 및 테스트 절차의 범위와 성격, 실제 제조 공정에서 요구되는 기술 수준 등의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으며, 어느 하나의 요소 만이 아닌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판정이 이루어짐
- 단순한 조립 작업은 일반적으로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되지 않음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310,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사례

플렉스 소켓(flex sockets), 스피더 핸들(speeder handles), 플렉스 핸들(flex handles) 제작용 특정 수공구 부품들을 수입하여 미국에서 열처리, 표면 세척, 녹 및 부식 방지 처리 등 수행

판결

해당 부품들이 대부분 수입 전에 냉간성형(cold-formed) 또는 열간단조(hot-forged) 방식으로 최종 형상으로 가공되어 있었으며, 미국으로 수입 후에 수행된 가공(강도를 높이기 위한 열처리, 표면 세척을 위한 샌드블라스트 처리, 녹 및 부식 방지를 위한 전기 도금 처리 등)은 수입 부품의 **명칭**을 변경하지도 않았고, 가공 후 물품의 **성질**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았으며, 해당 물품의 **용도**는 수입 시점에 이미 정해졌다고 판단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결함

- CBP는 해당 사례에서 실질적 변형의 판단을 위해 HQ H309984 사례를 인용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9984 (2020.09.11.)*

사례

중국으로 수입된 베트남산 알루미늄 클램프 헤드를 열처리, 코팅한 후 중국산 수평 금속 바, 디스크 클러치, 스프링과 함께 조립하여 바 클램프를 생산함. 이때, 클램프 헤드는 수입될 시점에서 이미 완성된 바 클램프와 거의 동일한 모양, 형태 및 크기를 유지함

판정

실제 목재 조각을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은 클램프 헤드이며, 중국산 수평 금속 바, 디스크 클러치, 스프링은 헤드가 목재를 고정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만을 담당함. 특히 베트남산 클램프 헤드는 중국에서의 추가 가공을 거치면서 형태, 구조, 크기에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를 베트남으로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판정 결과

- ▣ CBP HQ H309984 사례와 마찬가지로 최종 제품인 F-클램프의 핵심 기능은 한국에서 생산된 클램프 본체에 의해서 부여되며, 클램프 본체를 생산하기 위해 중국산 강철 막대에 행해진 한국에서의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므로, 클램프 본체의 원산지는 한국임
- ▣ 또한 클램프 본체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입될 당시 이미 그 형태와 외관이 최종 제품인 F-클램프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 ▣ 반면, 중국에서 수행된 표면 처리 및 부품 결합 공정은 단순 공정으로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킬 만큼 복잡하고 의미 있지 않으므로, 최종 제품에 대한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는 클램프 본체의 원산지인 한국임

결론

-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는 핵심 구성 요소가 생산된 한국임

II 시사점

- 공구와 같은 물품의 경우,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구성 요소(외국산)가 가공국으로 수입될 시점에 이미 최종 제품의 형태와 크기 및 모양 등을 가지고 있고, 가공 후에도 이러한 형태, 크기 및 모양 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움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12674 (2021.02.24.), <https://rulings.cbp.gov/ruling/H312674>
- CBP Ruling HQ H309984 (2020.09.11.), <https://rulings.cbp.gov/ruling/H309984>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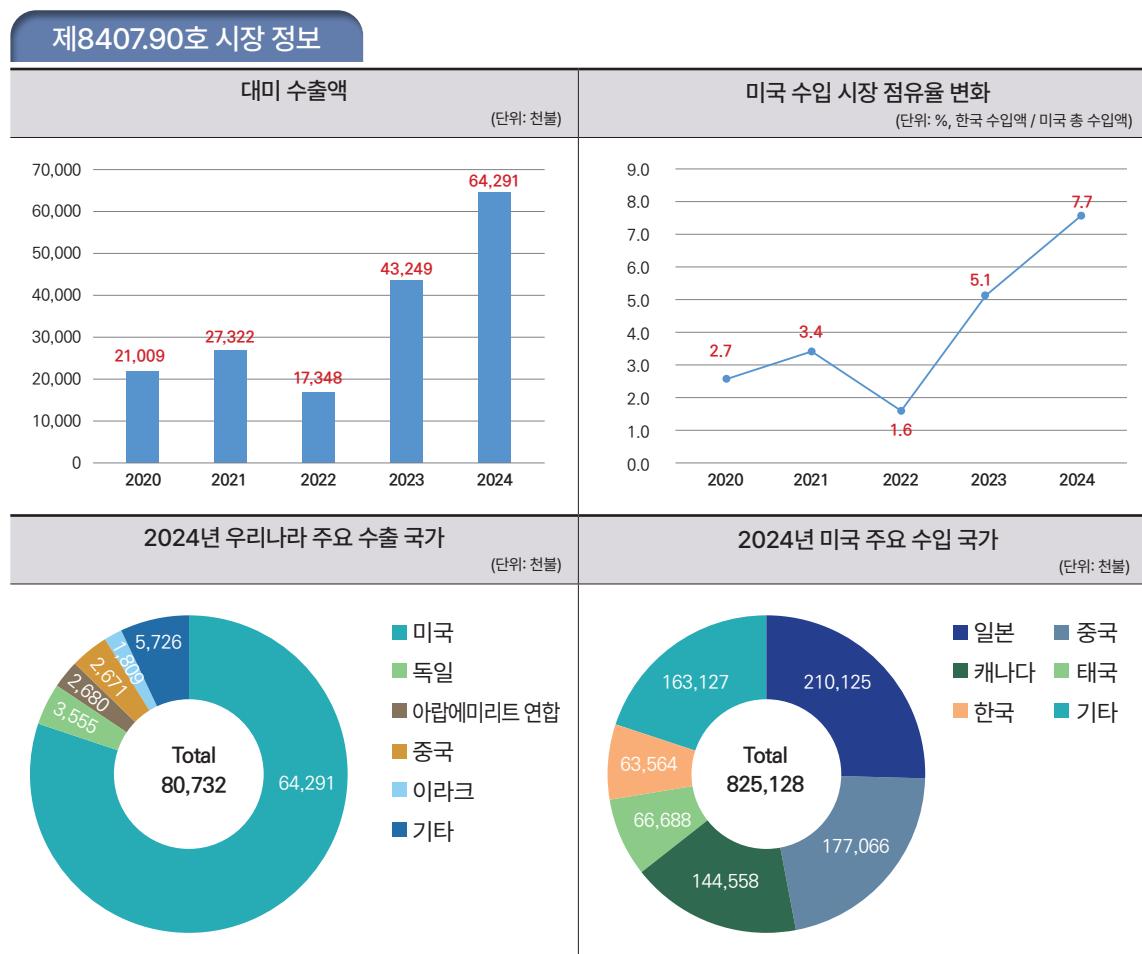
가솔린 구동 수평축 엔진

요약

사례명	가솔린 구동 수평축 엔진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12432 (2021.03.24.)
사실관계	중국으로부터 엔진 생산을 위한 100개 이상의 모든 부품을 멕시코로 수입한 뒤, 이를 조립하여 서브 어셈블리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서브 어셈블리를 조립하여 엔진 생산
쟁점 및 판정	<p>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p> <p>CBP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이라고 판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 제품 생산에 사용된 모든 부품은 중국산이며, 이러한 부품들은 이미 여러 서브 어셈블리의 구성 요소로 사용되도록 '사전에 정해진 용도(pre-determined end-use)'를 가지고 있음- 멕시코에서 수행된 공정은 중국산 개별 부품들을 장착(mounting)하거나 용접(welding)하는 등의 복잡하고 의미 있는 조립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사전에 정해진 용도를 가지고 수입된 부품들을 조립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맞추어 끼우는 것(fitting together of parts and ... imported with a pre-determined end-use and ... ready for assembly)'에 해당하므로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음
근거법령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8407.90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
	미국 기본세율	0%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사례명 [가솔린 구동 수평축 엔진]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12432 (2021.03.24.)

사실관계

요청자 MTD Products, Inc. (대리인: Adrienne Braumiller, Braumiller Law Group PLLC)

제품명	• 가솔린 구동 수평축 엔진 (gasoline-powered horizontal shaft engine)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크랭크케이스, 크랭크샤프트, 캡샤프트, 실린더, 피스톤, 연료 시스템, 시동 시스템, 윤활 시스템, 배기 시스템, 스타터, 제어 장치 등 모든 구성품은 중국에서 전량 수입됨 (모두 중국산)
용도	• 제설기용 엔진
완제품 HTSUS	• 8407.90.90

제조공정



01

중국산 부품
멕시코로 수입



02

서브 어셈블리 조립



03

최종 엔진
조립



04

미국 수출

상세공정

- 중국산 부품 멕시코로 수입
- 멕시코 제조 공정 (100개 이상의 부품 개별 조립, 교정, 시험 공정 등 포함)
 - 개별 부품 세척
 - 여러 부품을 주요 서브 어셈블리로 조립 (ex. 크랭크케이스, 커버, 크랭크샤프트를 조립하여 크랭크케이스 어셈블리를 만들고 이를 다시 실린더 헤드 어셈블리와 조립하여 블록 어셈블리 형성)
 - 최종 엔진 조립
- 미국 수출

쟁점사항

-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681 F.2d 778 (1982)

❖ 참고 판례: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6 CIT 204, 573 F. Supp. 1149 (1983), *aff'd*, 741 F.2d 1368 (Fed. Cir. 1984)

- 조립 작업이 단순하거나 최소한의 수준에 그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판단 요소로는 조립 작업의 성격(예: 조립되는 부품 수), 수행 작업 공정의 다양성, 작업 소요 시간, 숙련도, 세부 작업,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지 여부 등의 사항이 있음

❖ 참고 판정: *C.S.D. 80-111, C.S.D. 85-25, C.S.D. 89-110, C.S.D. 89-118, C.S.D. 90-51, and C.S.D. 90-97*

- 만약, 제조 또는 결합 공정이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CBP는 조립 공정이 실질적 변형에 이를 정도로 충분히 복잡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국가 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공정과 포함되는 서브 어셈블리 제조 공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3866 (2020.02.13.)*

사례 약 절반에 해당하는 외국산 부품들이 멕시코로 수입되어, 멕시코산 부품들과 함께 서브 어셈블리로 결합되고 이들을 플라스틱 펌프 부품들과 결합하여 원심형 와셔 펌프를 생산함. 이때, 멕시코 내에서 납땜, 용접, 기계가공, 플라스틱 사출 성형, 압착 등을 포함한 복잡한 작업이 수행되었으며, 특히 스테이터와 로터가 멕시코에서 제조됨

판정 멕시코 내 작업의 범위와 복잡성을 고려할 때,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멕시코산임

- 반면, 조립 공정이 단순하거나 경미하고 사전에 정해진 용도를 가진 부품을 그대로 결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3864 (2019.12.26.)*

사례 중국산 모터에 임펠러, 씰, 플라스틱 하우징을 멕시코에서 조립하여 펌프 어셈블리 완성

판정 멕시코에서 행해진 조립은 단순히 부품들을 서로 압입하는 것으로, 이러한 단순 조립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법령 및 분석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2821 (2019.07.26.)

- 사례** 중국산 다섯 개의 서브 어셈블리와 기타 부품을 스웨덴에서 여객용 차량으로 조립
판정 조립 공정이 복잡하지 않고 개별 부품들의 용도가 수입 시점에서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 사례** 중국에서 제조된 스테이터 또는 후면 하우징, 로터 또는 아마추어 어셈블리, 엔드캡 어셈블리를 멕시코에서 전동 모터로 조립
판정 이들 부품은 이미 전동 모터 부품으로서 용도가 정해져 있었고 멕시코에서의 생산은 단순 조립 이므로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126155 (2010.10.29.)

- 사례** 스웨덴산 부품을 독일로 수입하여, 해당 부품들에 대한 도색, 건조, 세척 등의 공정을 수행한 후 독일산 제품들과 조립하여, 선박의 프로펠러와 엔진 사이의 기계적 결합 역할을 담당하는 마린 스트레스 어셈블리 생산
판정 스웨덴산 부품은 최종 어셈블리 내에서 기계적 결합이라는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최종 제품에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었으며, 독일에서 수행된 공정은 제한된 작업에 불과하여 스웨덴산 부품들의 정체성이 상실되지 않았으므로 독일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판정 결과

- ▣ CBP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이라고 판정함
- 최종 제품 생산에 사용된 모든 부품은 중국산이며, 이러한 부품들은 이미 여러 서브 어셈블리의 구성 요소로 사용되도록 '사전에 정해진 용도(pre-determined end-use)'를 가지고 있음
 - 멕시코에서 수행된 공정은 중국산 개별 부품들을 장착(mounting)하거나 용접(welding)하는 등의 복잡하고 의미 있는 조립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사전에 정해진 용도를 가지고 수입된 부품들을 조립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맞추어 끼우는 것(fitting together of parts and ... imported with a pre-determined end-use and ... ready for assembly)'에 해당하므로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음

결론

- ✓ 최종 제품에 대한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는 중국임

III 시사점

- CBP는 조립 공정과 관련하여 최종 제품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 요소가 수입 시점에 이미 최종 제품에 사용될 목적으로 수입이 되고, 조립이 단순히 끼워 맞추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12432 (2021.03.24.), <https://rulings.cbp.gov/ruling/H312432>
- CBP Ruling HQ H309984 (2020.09.11.), <https://rulings.cbp.gov/ruling/H309984>
- CBP Ruling HQ H303866 (2020.02.13.), <https://rulings.cbp.gov/ruling/H303866>
- CBP Ruling HQ H303864 (2019.12.26.), <https://rulings.cbp.gov/ruling/H303864>
- CBP Ruling HQ H302821 (2019.07.26.), <https://rulings.cbp.gov/ruling/H302821>
-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1619>
- CBP Ruling NY N126155 (2010.10.29.), <https://rulings.cbp.gov/ruling/N126155>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1984),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309750/belcrest-linens-v-united-states/>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case
5

변속기용 볼 베어링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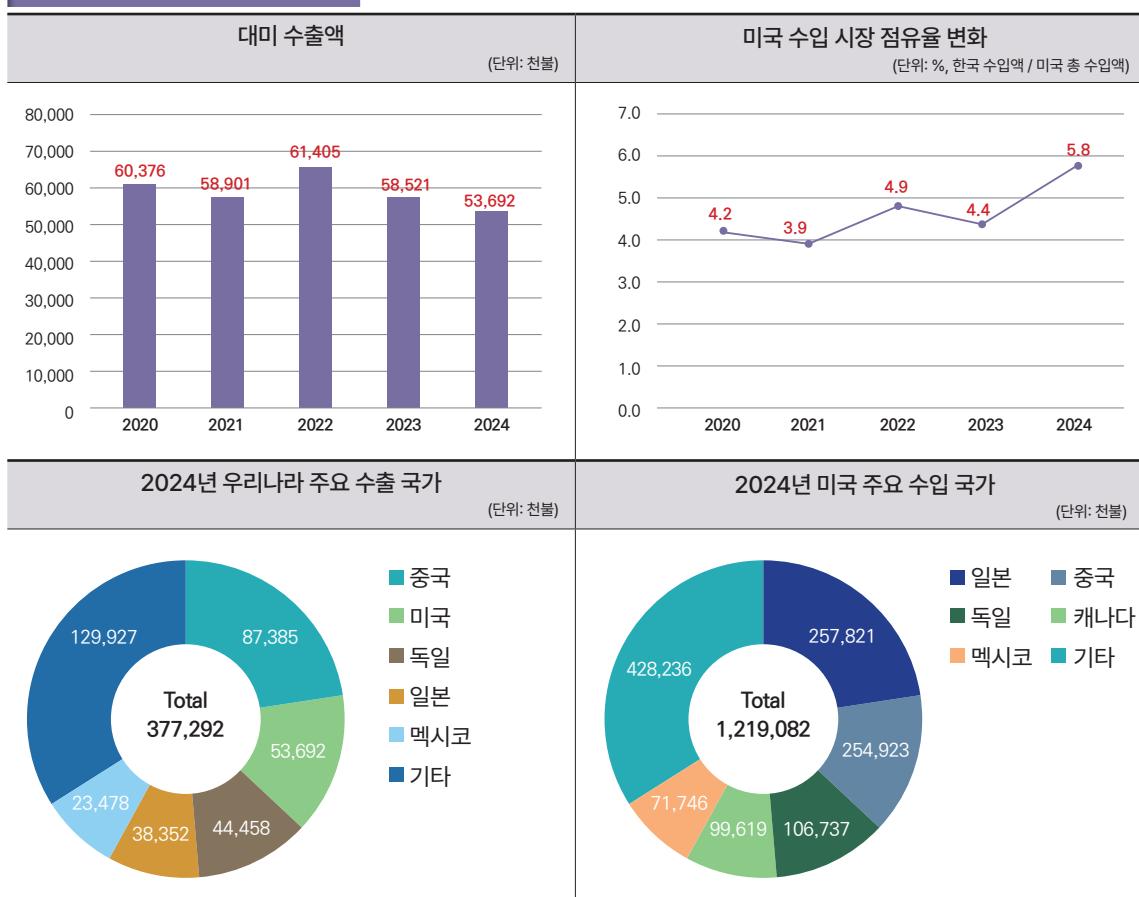
사례명	변속기용 볼 베어링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18162 (2021.04.07.)
사실관계	중국 또는 일본에서 중국에서 생산된 내륜 및 외륜을 선삭 및 열처리하여 링 모양으로 만든 뒤, 멕시코에서 정밀 레이스웨이 가공 및 최종 조립을 통해 자동차 변속기용 볼 베어링 완성
쟁점 및 판정	<p>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p> <p>CBP는 베어링의 원산지판정과 관련하여, 일관되게 정밀 레이스웨이가 가공된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해오고 있으며, 본 사안의 경우, 멕시코에서의 최종 연삭 및 호닝 공정을 거쳐 이러한 정밀 레이스웨이가 형성되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정밀 레이스웨이 가공이 이루어진 멕시코임</p>
근거법령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8482.10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 or 13%
	미국 기본세율	2.4% or 9%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제8482.10호부터 제8482.80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 (제8482.9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82.99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40%, 공제법의 경우 5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제8482.10호 시장 정보



❖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사례명 [변속기용 볼 베어링]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18162 (2021.04.07.)

사실관계

요청자 Nachi America Inc.

제품명	• 33BC 및 50BC 변속기용 볼 베어링
구성	• 내륜, 외륜, 리테이닝 케이지 어셈블리, 단열 볼로 구성 - 33BC 볼 베어링: 외경 48mm, 폭 7mm - 50BC 볼 베어링: 외경 68mm, 폭 7mm
용도	• 자동차 변속기용
완제품 HTSUS	• 8482.10

제조공정



01

중국에서 외륜과
내륜 제조



02

중국 또는 일본에서 선삭 및
열처리 공정 수행



03

멕시코에서 정밀 레이스웨이
가공 및 최종 조립



04

미국 수출

상세공정

1. 중국에서 냉간 압연, 조 연삭 공정 등을 통해 강봉을 가공하여 외륜과 내륜 제조
2. 중국 또는 일본에서 선삭 공정을 통해 링 모양으로 가공 후 열처리
 - 시나리오 1: 중국에서 레이스 선삭 및 열처리 공정 수행
 - 시나리오 2: 중국에서 레이스 선삭 공정 수행 후 일본에서 열처리 수행
 - 시나리오 3: 일본에서 레이스 선삭 및 열처리 공정 수행
3. 멕시코로 수출
4. 멕시코 제조 공정
 - 내륜과 외륜 표면 연삭 수행
 - 호닝 공정과 최종 연삭 공정을 통해 정밀 레이스웨이 가공
 - 인도네시아 또는 중국에서 제조된 볼을 내륜과 외륜에 삽입
 - 일본산 리테이닝 케이지 설치
 - 완성된 볼 베어링에 탈자, 세정, 탈지, 검사 공정 등을 수행
5. 미국 수출

쟁점사항

-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또는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다양한 원산지의 부품들이 조립되어 완제품으로 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의 판단은 사용된 부품과 그 부품들이 거친 제조 공정을 모두 고려하여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가진 제품이 생산되었는지를 고려하며, 어느 하나의 요인만으로 판단하지 않음

- CBP는 볼 베어링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본질적 요소인 레이스의 원산지를 고려해 옴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562528 (2002.12.10.)*

- 베어링의 본질적인 성격과 용도는 강철 링이 연삭 및 마무리 공정을 거쳐 정밀 레이스웨이를 갖춘 레이스가 되고, 더 이상 강철 링으로 간주 되지 않게 되었을 때 결정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731968 및 731969 (1990.03.19.)*

- 한 국가에서 링이 열처리 및 연마(polishing)되고 다른 국가에서 레이스 형성 및 초정밀 가공이 이루어진 경우, 베어링의 원산지는 정밀 레이스웨이가 가공된 국가로 결정됨

판정 결과

▣ CBP는 베어링의 원산지판정과 관련하여, 일관되게 정밀 레이스웨이가 가공된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해오고 있으며, 본 사안의 경우, 멕시코에서의 최종 연삭 및 호닝 공정을 거쳐 이러한 정밀 레이스웨이가 형성되므로, 3가지 시나리오에서 모두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정밀 레이스웨이 가공이 이루어진 멕시코임

결론

- ✓ 제301조 적용 목적상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멕시코임

③ 시사점

- CBP는 볼 베어링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정밀 레이스웨이 가공이 이루어진 국가를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국가로 판정함

④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18162 (2021.04.07.), <https://rulings.cbp.gov/ruling/N318162>
- CBP Ruling HQ 562528 (2002.12.10.), <https://rulings.cbp.gov/ruling/562528>
- CBP Ruling HQ 731968 (1990.03.19.), <https://rulings.cbp.gov/ruling/731968>
- CBP Ruling HQ 731969 (1990.03.19.), <https://rulings.cbp.gov/ruling/731969>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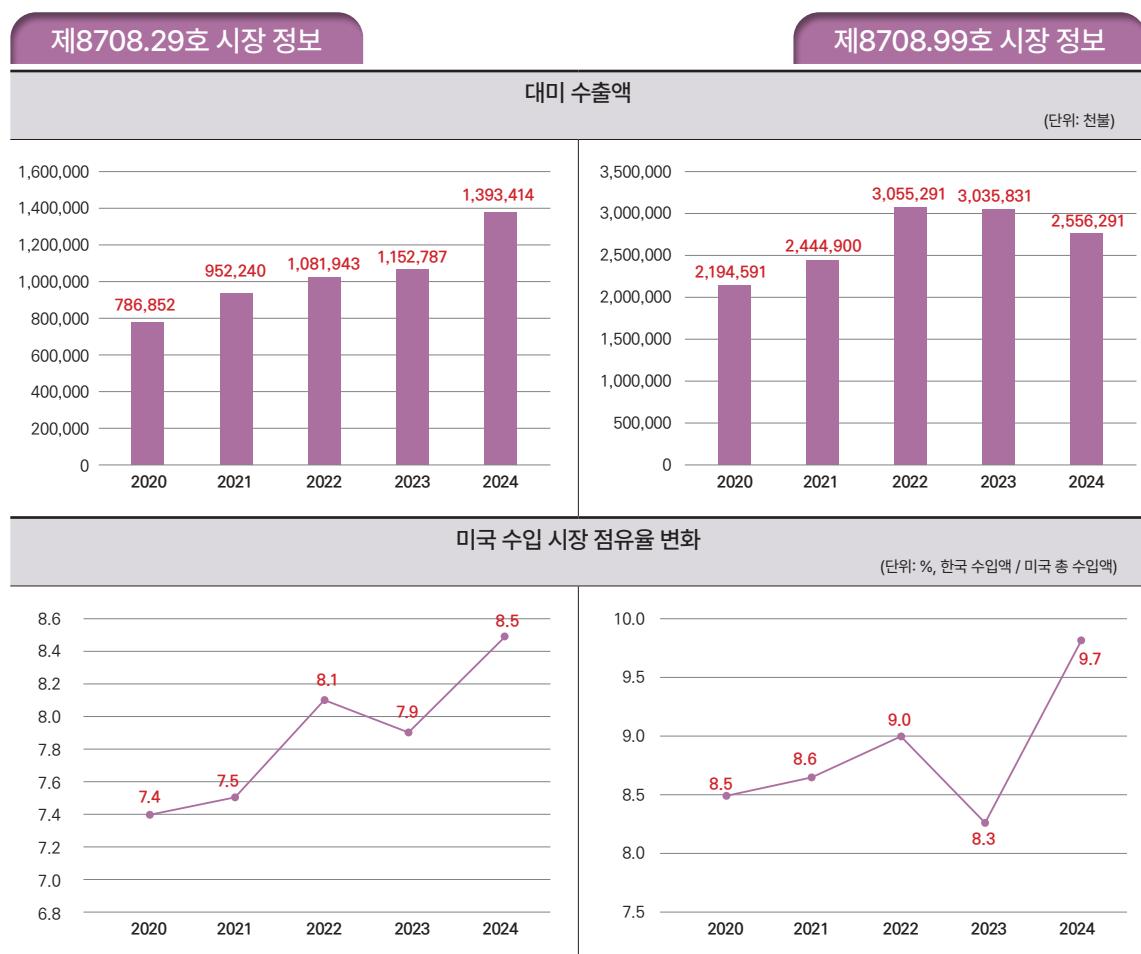
자동차용 선쉐이드 & 시트커버

요약

사례명	자동차용 선쉐이드 & 시트커버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44131 (2024.12.19.)
사실관계	<p>선쉐이드 캄보디아에서 중국산 알루미늄 필름과 캄보디아산 플라스틱 입자를 함께 적층한 후, 절단, 봉제, 기타 공정을 수행하여 자동차 전면 유리 가림막용 선쉐이드 생산</p> <p>시트커버 캄보디아에서 중국산 직물을 캄보디아산 폼을 함께 적층한 후, 절단, 봉제, 기타 공정을 수행하여 시트커버 생산</p>
쟁점 및 판정	<p>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p> <p>중국산 필름 및 직물을 캄보디아로 수입한 뒤,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진 적층, 절단 및 봉제 공정은 중국산 재료를 식별 가능한 새로운 상업적 물품인 선쉐이드 및 시트커버로 변형시키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캄보디아임</p>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8708.29호 및 제8708.99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
	미국 기본세율	0% or 2.5%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 또는 순원가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5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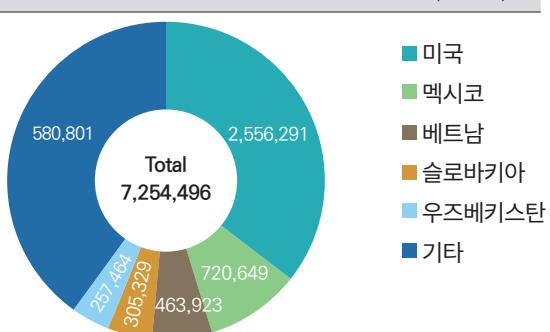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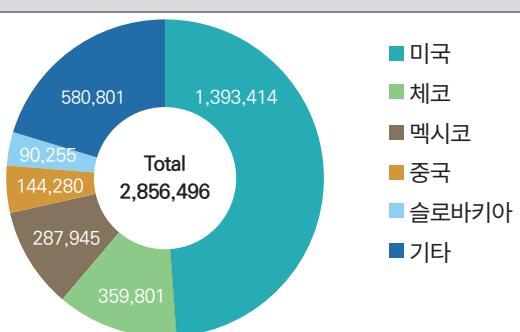
❖ 자료: K-stat

제8708.29호 시장 정보

제8708.99호 시장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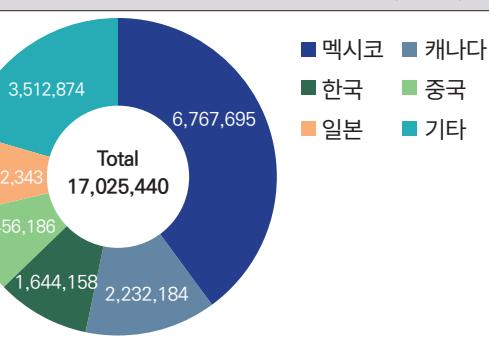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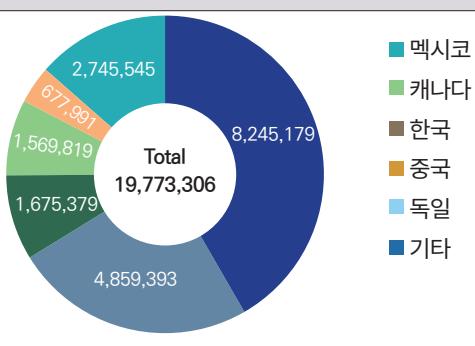
2024년 우리나라 주요 수출 국가

(단위: 천불)



2024년 미국 주요 수입 국가

(단위: 천불)



❖ 자료: K-stat

② 판정사례

사례명 [자동차용 선쉐이드 & 시트커버]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44131 (2024.12.19.)

사실관계

요청자 Higher Technology (Cambodia) Co., Ltd.

제품	제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쉐이드 (부품 번호: B01DH3687001.4) 애틀랜타 블랙 시트커버 (부품 번호: B01SH3668001)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쉐이드: 알루미늄 필름, 플라스틱 입자 애틀랜타 블랙 시트커버: 폼, 직물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외선 차단용 및 시트 보호용
	완제품 HTS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쉐이드: 8708.29.5160 애틀랜타 블랙 시트커버: 8708.99.8180

제조공정



01

중국산 알루미늄 필름
캄보디아로 수입



02

적층 공정
수행



03

절단 및 봉제



04

미국 수출

상세공정

[선웨이드 상세 공정]

1. 롤 형태의 중국산 알루미늄 필름을 캄보디아로 수입
2. 캄보디아산 플라스틱 입자와 함께 적층 공정 수행
3. 절단 및 봉제
4. 기타 공정(검사, 접기, 포장 등) 수행
5. 미국 수출



01

중국산 직물을
캄보디아로 수입



02

적층 공정
수행



03

절단 및 봉제



04

미국 수출

상세공정

[시트커버 상세 공정]

1. 중국산 직물을 캄보디아로 수입
2. 캄보디아산 품과 함께 적층 공정 수행
3. 절단 및 봉제
4. 기타 공정(검사 및 포장) 수행
5. 미국 수출

쟁점사항

-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 제301조 적용을 위해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 기준이 활용됨

판정 결과

- ▣ 중국산 필름 및 직물을 캄보디아로 수입한 뒤,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진 적층, 절단 및 봉제 공정은 중국산 재료를 식별 가능한 새로운 상업적 물품인 선쉐이드 및 시트커버로 변형시키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캄보디아임

결론

- ✓ 두 가지 물품 모두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는 캄보디아임

III 시사점

- 필름, 직물 등의 원재료를 적층하고 절단 및 봉제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여 해당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가 원산지로 판정됨

IV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44131 (2024.12.19.), <https://rulings.cbp.gov/ruling/N344131>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펌프 부분품-Fluid ends

요약

사례명	펌프 부분품-Fluid ends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51810 (2025.08.27.)
사실관계	<p>시나리오 1 중국에서 제조된 직사각형 모양의 강철 블록 및 기타 부품을 한국으로 수입한 후, 한국에서 블록을 하우징으로 가공하고 기타 부품과 함께 최종 조립하여 Fluid ends 생산</p> <p>시나리오 2 한국에서 제조된 직사각형 모양의 강철 블록을 중국으로 수출한 후, 중국에서 블록을 하우징으로 가공하고 기타 부품과 함께 최종 조립하여 Fluid ends 생산</p>
쟁점 및 판정	<p>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하우징은 가압 과정에 기여하고 내부 부품을 감싸는 역할을 담당하며, 완제품 가치의 90%를 차지하므로 최종 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핵심 구성 요소임반면, 하우징에 기타 부품을 조립하는 과정은 단순히 기타 부품을 삽입하고 결합하는 단순 조립 과정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음따라서, 최종 물품의 원산지는 하우징이 제작된 국가이며, 이에 따라 시나리오 1에 따른 원산지는 한국, 시나리오 2에 따른 원산지는 중국임
근거법령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I 판정사례

사례명 [펌프 부분품-Fluid ends]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51810 (2025.08.27.)

사실관계

요청자 Jereh Energy Equipment and Technologies Corporation (대리인: TradeLaw PC)

제품명	• Fluid ends
제품	구성
용도	• 유압 파쇄 및 석유·가스 산업에서 사용되는 피스톤 펌프의 구성품

제조공정



01

직사각형 모형의
강철 블록 제작



02

성형, 드릴링 등의 공정을 통해
블록을 하우징으로 가공



03

기타 부품과 함께
최종 조립



04

미국 수출

상세공정

시나리오 1

1. 중국에서 제강, 전기슬래그 재용해, 단조 공정을 통해 직사각형 모양의 블록 제작
2. 블록 및 기타 중국산 부품을 한국으로 수입
3. 표면 성형, 실린더 드릴링, 열처리, 밀링, 보링 등의 공정을 통해 최종 제품의 설계 및 치수에 맞도록 블록을 하우징으로 가공
4. 기타 중국산 부품과 함께 최종 조립
 - 밸브, 플랜지, O-링 및 스프링 등의 기타 부품을 하우징에 조립
5. 미국 수출

시나리오 2

- 시나리오 1의 1번 공정이 한국에서 수행되며, 나머지 공정은 모두 중국에서 수행

쟁점사항

-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1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v. United States*, 681 F.2d 778, 782 (1982)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1201 (Fed. Cir. 1993)

- CBP는 제조 공정이 실질적 변형에 이를 만큼 복잡한지 여부는 해당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작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함

판정 결과

- 하우징은 가압 과정에 기여하고 내부 부품을 감싸는 역할을 담당하며, 완제품 가치의 90%를 차지하므로 최종 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핵심 구성 요소임
- 반면, 하우징에 기타 부품을 조립하는 과정은 단순히 기타 부품을 삽입하고 결합하는 단순 조립 과정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최종 물품의 원산지는 하우징이 제작된 국가이며, 이에 따라 시나리오 1에 따른 원산지는 한국, 시나리오 2에 따른 원산지는 중국임

결론

-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는 시나리오 1의 경우 한국, 시나리오 2의 경우 중국임

II 시사점

- 본 사례에서 Fluid ends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핵심 구성 요소는 하우징이며, 하우징에 기타 부품들을 결합하고 조립하는 과정은 단순한 공정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음

③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51810 (2025.08.27), <https://rulings.cbp.gov/ruling/N351810>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8

에어컨 실외기

요약

사례명	에어컨 실외기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52477 (2025.08.29.)
사실관계	중국산 응축기, 압축기, 구리 튜브 등을 포함한 여러 국가산 부품을 태국으로 수입한 뒤, PCBA 및 여러 서브 어셈블리를 생산하고, 이를 최종 조립하여 에어컨 실외기 완성
쟁점 및 판정	<p>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p> <p>본 사안의 경우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산 부품들이 태국에서 서로 조립되어 실외기가 생산되나, 태국에서의 조립 공정은 대체적으로 나사 체결, 볼트 체결, 용접 작업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공정에 해당하며, 이러한 공정은 난방 및 냉방 공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중국산 부품(압축기, 응축기 등)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임</p>
근거법령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I 판정사례

사례명 [에어컨 실외기]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52477 (2025.08.29.)

사실관계

요청자 Hisense USA Corporation

제품명 • 에어컨 실외기 (모델명: HD PRO, HD ULTRA, HD EDGE, HI UNI)

제품 구성 • 압축기, 응축기, 모터, 팬, PCBA, 밸브가 내장된 쇄시

용도 • 실내기와 결합하여 공간을 냉난방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도록 설계

제조공정



01

원재료 및 부품
캐나다로 수입



02

PCBA 및 각종 서브
어셈블리 생산



03

최종 조립



04

미국 수출

상세공정

1. 중국산 응축기, 압축기, 구리 튜브 등을 포함한 여러 국가산 부품을 태국으로 수입
2. 태국 제조 공정

(1) PCBA 생산

- 여러 국가산 부품을 사용해 태국에서 표면 실장, 납땜 공정 등을 수행

(2) 팬 서브 어셈블리 생산

- 여러 국가산 플라스틱 펠릿을 사용해 팬 허브와 블레이드 제작

- 팬 허브, 블레이드를 중국산 부식 및 베어링과 초음파 용접 및 열처리하여 결합

(3) 응축기 서브 어셈블리 생산

- 알루미늄 포일을 핀 형태로 성형 및 프레스 처리

- 중국산 구리 튜브를 절단하여 U자 형태로 굽힘

- U자형 튜브, 핀, 커넥터, 조인트 및 플러그 등을 중국산 응축기에 브레이징

- 응축기에 질소 충전 후 테스트 수행

(4) 압축기 서브 어셈블리 생산

- 중국산 압축기에 태국에서 생산된 금속 패널, 판, 브래킷 등 부착

(5) 최종 조립

- 나사 및 볼트 체결, 용접 등 비교적 단순한 공정 수행

3. 미국 수출

쟁점사항

-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v. United States, 681 F.2d 778, 782 (1982)*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판정 결과

- 본 사안의 경우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산 부품들이 태국에서 서로 조립되어 실외기가 생산되나, 태국에서의 조립 공정은 대체적으로 나사 체결, 볼트 체결, 용접 작업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공정에 해당하며, 이러한 공정은 난방 및 냉방 공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중국산 부품(압축기, 응축기 등)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임

결론

-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는 중국임

II 시사점

- 압축기, 응축기와 같이 최종 물품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구성 요소를 수입한 뒤, 단순히 나사 체결, 볼트 체결, 용접 등과 같은 작업만이 수행된 경우, 실질적 변형을 인정받기 어려움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52477 (2025.08.29.), <https://rulings.cbp.gov/ruling/N352477>
-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1619>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9

물티슈

요약

사례명	물티슈 무역구제조치 및 추가 관세 조치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52216 (2025.09.08.)
사실관계	중국산 부직포 를을 한국으로 수입한 뒤, 베이스 시트 생산 및 한국산 독점 세정 용액을 함침하여 생산한 물티슈를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p>① 무역구제조치 및 추가 관세 조치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p> <p>최종 제품에 본질적 성격을 부여하는 구성 요소는 한국산 독점 세정 용액이며, 중국산 부직포 를은 단순히 이를 운반하는 운반체 역할을 담당하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임</p>
근거법령	-

I 판정사례

사례명 [물티슈] 무역구제조치 및 추가 관세 조치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52216 (2025.09.08.)

사실관계

요청자 Kimberly-Clark Global Sales, LLC (대리인: Sidley Austin LLP)

제품명	• Cottonelle® 플러셔블 물티슈
제품 구성	• 독점 세정 용액 • 부직포
용도	• 개인위생을 위해 사용되는 습윤 처리된 일회용 물티슈

제조공정



- 상세공정
1. 중국산 부직포 룰을 한국으로 수입
 2. 한국 제조 공정
 - 부직포 룰을 절단하여 베이스 시트 생산
 - 한국산 독점 세정 용액을 베이스 시트에 함침
 - 절단, 압축 등의 공정 수행 후 소매 판매용으로 포장
 3. 미국 수출

쟁점사항

- ✓ 무역구제조치 및 추가 관세 조치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무역구제조치 및 추가 관세 조치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무역 구제 조치 및 추가 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판정은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1619(2018.11.06.)*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v. United States, 681 F.2d 778, 782 (1982)*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판정 결과

- 최종 제품에 본질적 성격을 부여하는 구성 요소는 한국산 독점 세정 용액이며, 중국산 부직포 룰은 단순히 이를 운반하는 운반체 역할을 담당하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임

결론

-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임

II 시사점

- 세정을 목적으로 하는 물티슈의 경우, 최종 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핵심 구성 요소는 세정 용액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해당 용액이 제조된 국가가 원산지국으로 판정됨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52216 (2025.09.08.), <https://rulings.cbp.gov/ruling/N352216>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10

자동차 에어백 시스템

요약

사례명	자동차 에어백 시스템 무역구제조치 및 추가 관세 조치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52543 (2025.09.09.)
사실관계	미국산 인플레이터, 태국산 에어백 쿠션, 중국산 하드웨어 등을 한국으로 수입한 뒤, 이를 최종 조립하여 생산한 자동차용 에어백을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p>① 무역구제조치 및 추가 관세 조치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은 인플레이터가 최종 제품의 주요 구성품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에서의 최종 조립 공정은 단순한 부품 결합에 불과하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인플레이터의 원산지인 미국이라고 주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플레이터는 화학 추진제를 포함하고 있어 에어백 제어 장치의 명령에 따라 급격한 화학 반응을 통해 가스를 발생시켜 에어백을 팽창시키는 동력원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 하지만, CBP는 인플레이터가 운전자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으며, 충돌 시 운전자를 잠재적 부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쿠션을 제공하는 것은 팽창된 에어백이므로, 에어백이 전체 모듈의 성격(character)을 결정하는 주요 부품이라고 판단 이에 따라, 무역 구제 조치, 추가 관세 적용 및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는 에어백의 원산지인 태국임
근거법령	-

I 판정사례

사례명 [자동차 에어백 시스템] 무역구제조치 및 추가 관세 조치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52543 (2025.09.09.)

사실관계

요청자 ZF Passive Safety Korea Co., Ltd (대리인: Daeyu Customs Brokerage Corp)

제품명

- 자동차 에어백 시스템 (부품 번호: A0055U2616J A)

제품 구성

- 인플레이터 (미국산)
- 에어백 쿠션 및 플레이트 (태국산)
- 하드웨어 (중국산)
- 커버 (한국산)
- 기타 부품

용도

- 충돌 감지 시 승객을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용도

제조공정



01

외국산 부품
한국 수입



02

최종 조립



03

미국 수출

상세공정 1. 외국산 부품 한국으로 수입

2. 한국에서 최종 조립 수행

- 부품 삽입, 나사 체결, 기능 테스트 등 수행

3. 미국 수출

쟁점사항

- ✓ 무역구제조치 및 추가 관세 조치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무역구제조치 및 추가 관세 조치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 무역 구제 조치 및 추가 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판정은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v. United States, 681 F.2d 778, 782 (1982)*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판정 결과

- ▣ 신청인은 인플레이터가 최종 제품의 주요 구성품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에서의 최종 조립 공정은 단순한 부품 결합에 불과하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인플레이터의 원산지인 미국이라고 주장함

- 인플레이터는 화학 추진제를 포함하고 있어 에어백 제어 장치의 명령에 따라 급격한 화학 반응을 통해 가스를 발생시켜 에어백을 팽창시키는 동력원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

- ▣ 하지만, CBP는 인플레이터가 운전자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으며, 충돌 시 운전자를 잠재적 부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쿠션을 제공하는 것은 팽창된 에어백이므로, 에어백이 전체 모듈의 성격 (character)을 결정하는 주요 부품이라고 판단

- ▣ 이에 따라, 무역 구제 조치, 추가 관세 적용 및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는 에어백의 원산지인 태국임

결론

- ✓ 무역 구제 조치, 추가 관세 적용 및 원산지표시 목적상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에어백의 원산지인 태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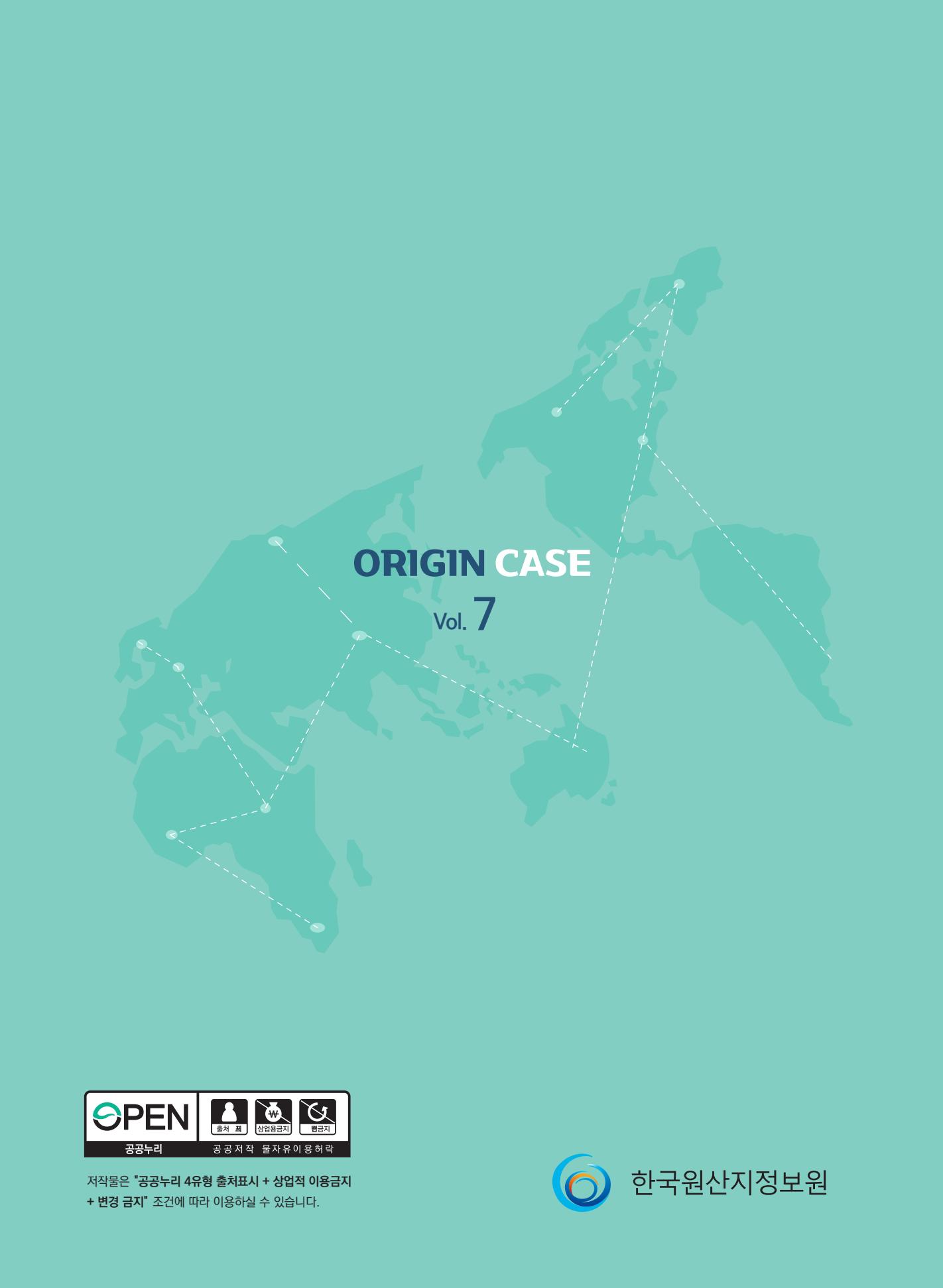
II 시사점

- 자동차용 에어백의 경우, 운전자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에어백이 전체 모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핵심 구성 요소로 판단되며, 본 사례의 경우 에어백이 생산된 국가가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로 판정됨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52543 (2025.09.09.), <https://rulings.cbp.gov/ruling/N352543>
-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1619>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ORIGIN CASE

Vol. 7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원산지정보원